

2021 주요 업무보고

2021. 2. 25.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4팀 239명/231명 (정/현원)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등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자 산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 약 심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279,266	22,087,219	△ 1,807,953	△ 8.1%
시 세	20,023,706	19,552,425	471,281	2.4%
세 외 수 입	253,930	228,657	25,273	11.1%
보 조 금	1,630	1,704	△ 74	△ 4.5%
보 전 수 입 등	-	2,304,433	△ 2,304,433	△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921,959	2,885,689	36,270	1.3%
인 력 합 편 영 성 비 (통 합 편 영 성 비)	801,226	783,271	17,955	2.3%
기 본 경 비	2,225	2,211	14	0.6%
재 무 활 동	2	8	△ 6	△ 75.0%
사 업 비	2,118,507	2,100,198	18,308	0.8%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794	1,917	△ 123	△ 6.4%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8,935	2,309	6,626	286.9%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43	54	△ 11	△ 20.3%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2,243	2,643	△ 400	△ 15.1%
시세입 목표달성	13,413	9,808	3,605	36.7%
조세정의 실현	6,995	7,396	△ 401	△ 5.4%
타 기관 지원	2,085,084	2,076,071	9,013	0.4%
자치구 교부금 (재정보전금)	1,675,686	1,607,945	67,741	4.2%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407,378	468,126	△ 60,748	△ 12.9%
출연금(지방세연구원)	2,020	-	2,020	100.0%

재 산 현 황 (市)

(2019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m ²)	동 수	면 적(천 m ²)
계	57,951	104,718 (100.0%)	60,488	10,897 (100.0%)
행정재산	55,753	103,362 (98.7%)	5,558	5,526 (50.7%)
일반재산	2,198	1,356 (1.3%)	54,930	5,371 (49.3%)

II .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구현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 '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5. S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실
천
과
제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정
책
과
제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1-2 '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1-5 S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을 통한 세입징수로 '21년 市세입 목표달성 추진

□ '21년 시세입 목표: 20조 237억원(전년대비 4,713억원 ↑, 2.4% ↑)
(단위: 억원, %)

구 분	2021년 (A)	(점유비)	2020년 (B)	(점유비)	전년대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00,237	(100.0)	195,524	(100.0)	4,713	2.4
취 득 세	50,589	(25.2)	46,330	(23.7)	4,259	9.2
지 방 소 득 세	51,964	(25.9)	54,331	(27.8)	-2,367	-4.4
재 산 세	33,945	(16.9)	29,990	(15.3)	3,955	13.2
지 방 소 비 세	18,243	(9.1)	20,414	(10.4)	-2,171	-10.6
기 타 시 세	45,496	(22.7)	44,459	(22.8)	1,037	2.3

□ 추진 계획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제 강화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구 합동 영상회의(3월, 9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기별 서면점검 강화

○ 시·구 협력을 통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세원발굴 강화

-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내실 있는 자치구 업무 지원 및 점검 추진
-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추진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치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세무조사 교육 실시(2월, 7월)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189,334,434	109,021,788	109,021,788	-
		1분기 교부금 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교부금 집행	

1-2 '21년 체납 시세 징수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

코로나19 장기 여파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및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 발굴, 언론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체납 징수목표액 달성

'21년 체납 징수목표액 : 2,010억원(시 390억, 자치구 1,620억)

체납징수 여건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체납자 가택 방문 등 적극적인 대면 체납징수 활동이 어려운 상황
- 특히, IMF 이후 2000년도부터 시행해 오던 자치구에 대한 체납액 징수 인센티브 지원 중단으로 관리자 관심저조, 체납액 징수 의욕 감소 등 체납징수 활동 소극적

추진 계획

- '코로나19' 직접 방문 징수활동 가급적 자제하되 악의적 체납자는 적극 대응(연중)
 - 체납자의 차명재산 및 허위 근저당권 설정 추적 등을 통한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 지자체간 분산된 체납을 합산하여 요건 충족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강화
- 체납징수 신기법 발굴 및 체납징수 전문지식·노하우 기관간 적극 공유('21.6월)
 - FIU(금융정보분석원)¹⁾의 1천만원 이상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 체납자 추적·징수
 - 출입국외국인청과 연계하여 신분 세탁 외국인 체납자 추적 및 타시도 우수 징수기법 공유
-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활성화,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한 대 언론 홍보 강화(매월)
 - ETAX, 서면, 유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 도모
 -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굴하여 유튜브, 페이스북,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홍보 강화
- 자치구별 체납징수 실적관리 강화 및 체납분야 자치구 지도점검 추진(분기)
 - 징수실적 부구청장 회의자료 제공, 우수 직원 선정 포상 등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 체납시세 징수	211,000	52,750	52,750	52,750	52,750
		사업계획 수립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1) FIU(금융정보분석원) :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으로 범죄자금의 세탁 행위등을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기관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주택 공시가격 분석 및 검증을 통해 공시가격제도의 형평성·공정성을 도모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추진 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이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과 공정성 저해
-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 협력 및 자치구 등 지원 필요

□ 추진 계획

- 주택 유형별(단독·공동)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 「주택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추진('21년 상·하반기 총2회)
 - ▶ '20~'21년 자치구별, 가격구간별 수준 및 형평성 측정 등 주택 실거래가 분석 및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 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주택 가격의 급격한 변동시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조정 요청(1~2월)
- 상업용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한국지방세연구원, '21. 2월~11월)
 - 집합 및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 유형별 시가표준액 산정 체계 개선 연구
 - 시가표준액 현실화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현70%)의 적정성 검토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 체계 구축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2월~12월)
 -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	387,651	-	193,826	-	193,825
			사업자선정 및 시스템 구축 추진		시스템 구축 완료

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의 취득세 등 비과세 및 지방세 독촉고지서의 전자고지 병행 추진으로 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도모

□ 재난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비과세 추진

- 의료기관 등에서 컨테이너 등을 활용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으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재산세가 비과세이나 1년 초과시 과세대상으로 전환
(‘20.12.31 기준)

합계	의료기관		보건소
	컨테이너 등 고정식	천막 등 이동식	
95	60	10	25

※ 과세 예상액 : 12건, 취득세 1,568천원, 재산세 467천원(천막 등 이동식은 과세제외)

- 선별진료소 장기운영으로 의료기관의 세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21.3월)
※ 의료법인은 취득세·재산세 감면대상(50~75%)이나 일반 의료기관은 감면 제외

□ 지방세 독촉고지서 전자고지 병행 추진 및 납부 인증수단 확대

- 독촉고지서를 종이로만 발송하여 징수액 대비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하므로 종이고지서 외 전자고지로 송달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추진(‘21.3월)
 - 개인균등분 주민세(6,170원)의 경우 독촉비용이 징수액의 33.7% 소요
※ 1만원 미만 주민세 독촉고지: 350,180건, 2,128백만원(서울시, ‘19년)
- ETAX 인증수단 확대로 대시민 납부편의 제공(‘21.2월~)
 -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금융결제원 금융인증서 도입(신한솔, 카카오, 네이버 등)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편의증진	비예산	관계법령 개정건의	-	-	-

1-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 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온택트에 기반한 AI기술을 활용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세금 수기 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지방세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추진 계획

○ 온택트¹⁾에 기반한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 세무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챗봇의 개별 맞춤형 세무상담 지원

- ETAX 콜센터, 25개 자치구 상담자료를 기반으로 챗봇 학습을 추진
- ETAX(PC, 모바일웹/앱) 검색단어 활용 지식화를 보강하여 답변의 정확도 증대

- ETAX 모바일 웹/앱, 24시간 실시간 운영으로 시민편의 제고('21.12월)

- 세금 설명, 세금 신고방법 및 납부액 산정, 전자고지 신청방법, 세액공제 등

○ 세금 수기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효율성 제고

- 비정형 수기납부서²⁾ 이미지 자료의 자동 데이터화 후 즉시 수납처리

- 수기납부서 이미지 스캔 후 전산데이터로 변환, 발송(시금고→세입시스템)
- 스캔 이미지와 전산데이터를 세입시스템에서 확인, 필요시 수정 후 수납처리

- 납부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을 통해 지방세 납부의 효율성과 편의성 확보

- 수기납부서 영수증을 자치구 이동 및 수기입력 절차를 생략하여 시금고 수납당일 수납완료로 처리기간의 획기적 단축(기존 13~23일→ 당일)

※ 수기세금 납부절차 : 납세자 은행납부→수합, 데이터 수동입력(시금고) → 영수증 이동(자치구)→수동입력·수납처리(자치구)

※ '20년 수기세금 납부현황 : 469천 건(37종 형태)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세입수납시스템 AI 상담서비스	비예산	계획수립	관련 시스템 개발	AI학습추진	AI학습 및 서비스
세금 수기납부서 자동데이터	비예산	계획수립	관련 시스템 개발	관련 시스템 개발	자치구 시범 후 시행

1)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Untact)'에 온라인을 통한 외부와의 '연결(On)'을 더한 개념으로, 온라인을 통해 대면하는 방식

2)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법령 서식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신고서에 과세정보를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2-3 생계형 서민채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 임대료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부담경감 연장 지원

- 지원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50%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지원
- 지원 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 결정



※ '20년 임대료 감면지원 현황 : 지하도상가, 풍물시장 등 총 4,225개소, 280억원

- 지원 기간 :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6개월 연장 추진('21.1월~6월)

※ 지원 규모 : 173억원 예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지속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율인하, 세무조사 유예
- 지원 기간 :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 '20년 세제지원 현황 : 총 416,850건, 6,631억원

(단위: 건, 억원)

합 계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세율인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416,850	6,631	416,043	6,238	530	325	70	38	21	-	186	30

□ 예산집행 : 비예산

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무상담을 추진하여 세무궁금증 해소, 절세방안 안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회생 지원

□ 추진 개요

- 구 성 : 358개동 331명('19) → 423개동 425명('20년)
※ 현재 4기 마을세무사 총 425명 활동 중(임기 2년, '20년~'21년)
-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임기 2년)
- 성 과 : '15년~'20년 총 2만 2천여건 상담

□ 추진 계획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소상공인연합회·지역소상공인회 등 유관단체와 연계, 세무상담 등 지원
 - 영세사업자 사업소득세 절감방안, 기타 세금 관련 궁금증 해소
※ 지역소상공인회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 마포,서대문 등 16개소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업, 상인들이 궁금해 하는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
 - 대규모 전통시장 방문상담, 전통시장별 전담 마을세무사 지정 추진
※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방문 상담은 코로나19 상황 거리두기 단계별 탄력적 운영
- 자영업자 등 실무에 유용한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21.6월중)
 - 소상공인회 등 방문상담 내용 축적 후 빈번한 상담 내용 위주로 제작
※ 서울시 유튜브, 시니어 센터, 관련 기관 등에 배포
- 마을세무사 만족도 조사 실시('21.7월~9월)
 - 상담활용성·친절도(시민), 활동 만족도(마을세무사) 등 조사로 내실있는 상담 지원
 - 우수 활동자에 표창 등 인세티브 제공, 활동실적 저조한 세무사 독려 등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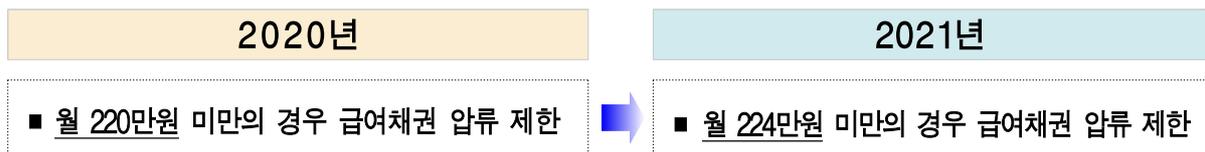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	6,600	20,600	800
		계획 수립	현장상담, 홍보물 제작	만족도 조사, 현장상담	현장상담, 협의회

2-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 연계 추진

□ 추진 계획

- 생계형 서민체납자 상담 전담창구 설치 및 운영('21.3월)
 - 상담 전담창구 설치 : 시(38세금징수과), 자치구(세무부서)
 - 38세금징수과 상담 전담 TF팀 구성 : 3명(뉴딜 일자리 참여자 채용 2명, 조사관 1명)
- 자치구·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서민체납자 지원 강화
 - (자치구 복지부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 책정 부과된 보험료를 적정 보험료로 조정 지원
- 생계형 서민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완화
 - 서울형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급여총액 월 224만원 미만 급여 체납자 미압류 조치



※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36,720원

- 코로나19 피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완화
 - 신용불량자 등록 및 관허사업 제한 보류 적극 추진
 - 부동산, 자동차 등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
 - 단,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납자는 시민제보 홍보 강화 및 끝까지 추적·징수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 뉴딜일자리	60,209	6,204	18,001	18,001	18,001
		계획서 수립 및 뉴딜 일자리 인력 교육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상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상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 실적 및 평가

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목표 제도 추진 및 공공구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업체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 추진 개요

-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한 희망기업 제품구매 촉진
 - 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 ※ 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사회적·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소기업

□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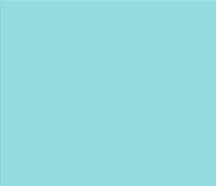
- '21년 市·區·투자출연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설정·관리(2월~)
 - '20년 구매실적: 1조 6,935억원(구매목표 1조 5,351억원 대비 110% 달성)
 - ▶ 시(49개) 5,289억원, 자치구(25개) 7,930억원, 투자출연기관(25개) 3,716억원
- 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희망기업 판로지원 강화
 - 市 기관 성과평가지표('20년 3%→'21년 4%)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1%) 반영 추진
 - 구매실적 우수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 「희망구매 실천상」 시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市 구매사이트 통합 연계·홍보
 - 「서울계약마당」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연계 및 홍보로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 시민 등이 이용
 - * 공공마켓(소상공인, <http://seoul.s2b.kr>), 함께누리(사회적경제기업, www.hknuri.co.kr), 에이블마켓(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www.ablemarket.or.kr)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희망기업 구매 목표제 관리	비예산	'20년 하반기 실적평가, '21년 구매목표 설정	구매 실적관리	구매실적 관리 및 상반기 실적평가	구매실적 관리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2021년 상반기 집중적인 계약심사와 표준품셈 개발 등으로 조기발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계약심사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공

□ 추진 계획

- 사전검토·통합심사등 신속집행 집중심사기간 운영('21년 상반기)
 - 공사, 용역, 구매 분야별 심사담당자 배정 후 3일 이내 계약심사 결과통보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시행으로 심사기간 단축
 - ※ '20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191건, 평균처리기간 2.9일
 - 코로나19관련 시설 설치 및 방역물품 등은 심사를 제외하여 신속한 방역추진 지원
- 공사에 적용되는 공통자재 합동조사를 통한 자재단가 표준화 추진(1월, 7월)
 - 시·구별로 달리 적용하던 모래, 골재, 철근 등 공사자재단가를 분야별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품목 확정 및 공통단가기준 적용
 - ※ '21년 1월 공통자재 품목 및 단가 공유현황 : 총 331종 1,345개
- 현장 소통형 서울형품셈 지속 개발로 적정원가 산정 지원
 - 노동시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할증요인 반영 등으로 원가기준체계 마련
 - 건설업계·발주부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 개발 추진
 - ※ 21년 서울형품셈 신규개발 9건, 정비 3건 추진
- 원가설계 모범 부서 및 사업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지정
 - 매년 반복사업, 조정율이 낮은사업(3%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 '20년 8개부서 105개 사업 ⇒ '21년 6개부서 116개 사업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집중 심사 통합운영	비예산	계획수립, 집중심사	집중심사	지속유지	지속유지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일괄신청 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공통자재단가 합동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상반기조사	-	하반기 조사	-
서울형 품셈개발 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 추진 계획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 '20년 계약심의위원회 총13회 개최, 121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21.6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및 사후평가 시스템으로 계약의 투명성 및 사업품질 제고('21.4월~)
 - 발주부서에서 적정 수의계약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서울계약마당」 수의 계약 공개견적 요청시스템으로 원활한 가격 비교 및 적정 업체 선정 지원
 - ▶ (발주부서)공개견적요청 → (업체)견적서 제출 → (발주부서)견적서 비교검토 → 계약체결
 - 수의계약 수행업체의 사업종료 후 사후 평가결과(과업의 충실성, 이행태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정보로 활용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 확대(8종→9종)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113,080	28,270	28,270	28,270	28,270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기능개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웹 접근성 품질마크 갱신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5,957	6,489	6,489	6,489	6,490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위원회 개최(매월)

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자금분석, 금리변동 등을 고려한 市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능력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금고 평가기준 마련

□ 시금고 개요

- 운영기간 : '19. 1. 1. ~ '22. 12. 31.(4년)
- 재정규모 : '21년 기준 41.8조원(일반 28조, 특별 12조, 기금 1.8조)
- 금고은행 : 1금고 신한은행(일반·특별회계), 2금고 우리은행(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

□ 추진 계획

-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제 회복을 위한 상반기 자금 적기 지원
 - 소비·투자분야 우선 지출 등 사업부서와 소통·협력을 통한 전략적 세출 집행
 - 회계간 자금 전용 등 가용자금 선 지출, 재원 부족시 관련부서와 지방채 발행 시기 협의
 - ※ '21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 : 2조 5,817억원(이월액 포함)
- 금리변동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 자금 운용
 - 금리변화 추이에 따라 정기예금 및 기업MMDA 가입 등 적정 운영
 - 자금 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금고통합시스템 개선('21년 상반기)
 - ▶ 연도별 수입·지출 통합자료 생성, 자금 흐름 및 분석 기능 추가
-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19.5.9. 개정)을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금리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확대 등 시금고 조례 개정('21년 상반기)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금, 대출 기준금리 등의 시금고 지정 세부평가 내용 마련('21년 하반기)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금 운용	비예산	자금운영 계획수립(2월)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고액지출계획수합·관리

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결산 개요

- 대상기관 : 43개 기관 284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6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 추진 계획

-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 3.21.까지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 4.13. ~ 5.17.(35일간,예정)
 - 제29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원 3명, 회계전문가 7명 등 10명)
 - ※ 결산검사 시정권고 건수 : '17년 60건, '18년 59건, '19년 81건, 20년 66건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31.까지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등 3건
 - ※ 2019회계 결산부터 시민의 결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결산서의 '결산 개요'를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로 대체하여 제출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1회 정례회) : 6.10. ~ 30.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8월.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결산제도 개선 등 사후관리 : 7월~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 추진	168,342	39,100	124,742	1,500	3,000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시민참여결산	결산교육교재 등



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우리시 필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 확보하고, 사업부서의 주요재산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추진 계획

○ 행정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시 필요재산 취득

- 舊 북부지검/지법의 온전한 소유권 확보를 위한 매입절차 마무리('21.12월)
-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추진을 위해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을 위한 감정평가('20.12월) 후 교환 계약 체결('21년 상반기)

○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취득·발굴지원 체계 마련

- 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부서 지원을 위해 재산관리 경험이 풍부한 자산관리과 직원이 사업목적에 맞는 최적후보지 추천 등 컨설팅 지원
- 사업목적에 따라 별도 관리하던 시유재산 정보를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부지 발굴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공유재산관리계획 적기 의결로 주요재산 취득·처분 적정성 도모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활한 심의 의결을 위해 사업부서-시의회 소통 강화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사업 예산편성 방지 위해 예산담당관, 각 상임위와 협력 확대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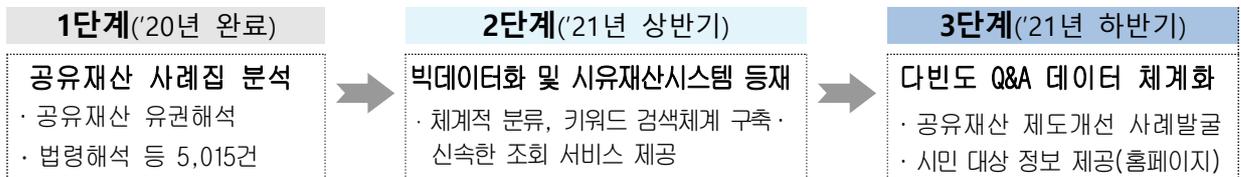
사업명	예산액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책사업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비예산	재산취득 컨설팅 지원	잠실운동장 부지 교환, 재산취득 컨설팅 지원	舊북부지검 매입 협상, 재산취득 컨설팅 지원	舊북부지검 매입 마무리, 재산취득 컨설팅 지원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및 매각대상 자산의 적기 매각 등으로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 추진 계획

- 국가 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시책사업 부지로 활용 방안 마련
 - 국가가 사용 중인 시유재산의 사용 현황 및 활용제고 가능성 등 업데이트(~21.4월)
 - 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행복주택+파출소 등 시책사업 통합 개발을 유도하여 시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 필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 도모
 - ▶ 21년도 추진 대상 : 중랑캠핑 숲, 수유 영어마을, 은평병원 등 총3개소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 적기 매각을 위해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와 적극적·선제적 업무협약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 관리개선으로 시민이용 활성화 및 세입증진 도모
 - ▶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 인터넷 상시 공개, 공개매각으로 적극적 시민활용 유도
- 공유재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방’ 운영
 -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업무활용도 제고 및 시민이 필요한 정보 제공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국가사용재산 활용방안	비예산	국가 사용 재산 파악	경찰청 등 협의체 운영	경찰청 등 회의	통합개발 사업사업자 선정
집단화 사업	250,000	-	50,000	100,000	100,000
		사업대상지 확정, 업무협약	기초측량 실시	확정측량, 공부정리	공부정리, 자가 재조사 의뢰

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시 전체 차원의 체계적 재산 관리체계 수립 및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위탁관리 지속 추진으로 시유재산 가치 증대 도모

□ 추진 계획

- 「시유재산시스템」 고도화로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 및 체계적 재산관리 기반 확충
 - 사용자 편의 증대를 위해 사업목적별 특성에 맞는 「적합 사업후보지 검색」 기능 구축
 - 저활용 시유재산 원천 차단을 위해 시유지 복합개발 시 여유 공간 발생하는 경우 타부서와 공유하기 위한 「여유 공간 사전입력 기능」 구축
-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유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지속 추진
 - 위탁관리 계약기간 종료('21.6월)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21.5월)
 - ▶ 계약내용, 관리실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관리 추진방향 결정
 - 위탁관리에 따른 매각대금, 대부료 등 수입·지출 정산 및 세입조치
- 「'21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실태파악 및 관리체계 확립
 -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으로 시유재산 관리현황에 대한 정확도 개선 및 조사대상 재산별 적정 관리 방안 마련
 - ▶ '21년 주요 조사대상 : 시유재산 중 미등재 건물 조사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 「'21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1.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위탁관리 추진	비예산	수탁기관 실적평가	수탁기관 선정	위탁관리 추진	위탁관리 추진
시유재산 정밀실태조사	100,000	-	-	-	100,000
		사업계획, 입찰공고	계약체결,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IV. 세입·세출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	2020년(최종)	증 감	
			금 액	비 율
계	20,279,266,351	22,087,219,605	△1,807,953,254	△8.1%
시 세	20,023,706,000	19,552,425,000	471,281,000	2.4%
세 외 수 입	253,930,298	228,657,903	25,273,395	11.1%
보 조 금	1,630,053	1,704,404	△74,351	△4.5%
보 전 수 입 등	-	2,304,433,298	△2,304,433,298	△1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1 예산	2020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총계	2,921,959,702	2,885,689,037	36,270,665	1.3%
재무과	804,779,271	786,946,739	17,832,532	2.3%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830,710	717,330	113,380	15.8%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12,580	218,435	△5,855	△2.7%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5,703	43,518	132,185	303.7%
시간선택제임가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334,708	726,559	△391,851	△53.9%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5,957	20,736	5,221	25.2%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101,000	101,000	0	0.0%
서울지방재정시스템 운영 및 공공채업무 추진	113,080	91,042	22,038	24.2%
기본경비	1,759,756	1,756,808	2,948	0.2%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01,225,777	783,271,311	17,954,466	2.3%
자산관리과	8,981,884	2,354,379	6,627,505	281.5%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 교환	7,000,000	400,000	6,600,000	1650.0%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816,164	1,817,962	△1,798	△0.1%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18,354	90,682	27,672	30.5%
기본경비	47,366	45,735	1,631	3.6%

구 분	2021 예산	2020 예산(최종)	증 감	
			금 액	증감률
계약심사과	112,168	122,495	△10,327	△8.4%
계약심사 업무추진	42,500	54,000	△11,500	△21.3%
기본경비	69,668	68,495	1,173	1.7%
세제과	1,680,076,552	1,610,718,504	69,358,048	4.3%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86,920	142,300	44,620	31.4%
마을세무사 운영	28,000	10,000	18,000	180.0%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0	1,200	100.0%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1,620,741	1,709,604	△88,863	△5.2%
부동산가격 공시지원	405,651	781,000	△375,349	△48.1%
기본경비	125,260	122,182	3,078	2.5%
국고보조금 반환	2,565	8,270	△5,705	△69.0%
재정보전금	1,675,686,000	1,607,945,148	67,740,852	4.2%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2,020,215	-	2,020,215	100.0%
세무과	420,937,019	478,074,897	△57,137,878	△12.0%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172,474	218,772	△46,298	△21.2%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850,532	831,560	18,972	2.3%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182,991	162,968	20,023	12.3%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192,700	194,200	△1,500	△0.8%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1,300,530	689,822	610,708	88.5%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0	0.0%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2,500,000	5,000,000	△2,500,000	△50.0%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730,770	1,655,078	75,692	4.6%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5,000,000	-	5,000,000	100.0%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503,770	-	503,770	100.0%
새와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879,732	945,106	△65,374	△6.9%
기본경비	145,510	141,631	3,879	2.7%
시세 징수교부금	407,378,010	468,125,760	△60,747,750	△13.0%
38세금징수과	7,072,808	7,472,023	△399,215	△5.3%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1,940,024	2,112,482	△172,458	△8.2%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4,787,078	5,004,960	△217,882	△4.4%
고액 체납시세 징수 강화	268,140	278,610	△10,470	△3.8%
기본경비	77,566	75,971	1,595	2.1%

V.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4	17	27	-	-
	시정· 처리요구사항	26	7	19	-	-
	건의 사항	8	1	7	-	-
	기타(자료제출 등)	10	9	1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결산검사 관련 서울시 재정규모가 늘어난 데 비해 결산검사 위원은 늘지 않았는데 재정규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필요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0.4.24.(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내용: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의 수(시도 5~10명, 시군구 3~5명)는 '94년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예산 규모의 증대를 고려하여 시도의 경우 10~20명, 시군구의 경우 5~10명 이하로 개정 필요 ○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일부 수용' 의견 회신 : '20.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결산검사위원을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재정규모 등 여건이 지자체별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위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상 위임 근거 필요 ○ 결산검사위원 선임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1.27.(조응천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 회부(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지: 결산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 도모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4조제3항 중“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u>”로 개정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등과 협의하여 결산검사위원 증원을 위한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세무과)

추진상황 : 추진 중

추진내용

- 최근 5년 간 시세 세입은 예산대비 평균 13.8% 초과 징수됨
※ '15~19년 간 시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징수액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0
결산율	113.3%	117.3%	114.5%	111.7%	112.3%

- 추계 오차가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로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과 동향 등으로 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큼.
※ '15~19년 간 취득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34,709	33,022	40,071	43,946	42,738
징수액	45,276	48,921	52,952	51,917	55,908
결산율	130.4	148.1	132.1	118.1	130.8

-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 '17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며,
 - ※ 자문위원회 개최: ('17년) 4회, ('18년) 2회, ('19년) 1회, ('20년) 1회
 -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협의 중 (2021.1월)
 - ※ 연구내용 :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분석 및 지표개발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사례를 참고하여 세목별·추계방식별 오차를 검증하고 정확성이 높은 모형 개발 추진
 - 세무종합시스템 內 세수추계 전산도입 추진 : '21.4월~1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항공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취득세의 납세지는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소재지로 항공진흥협회 및 7개 항공사는 등록정치장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13.5월) ○ 지자체간 무분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행안부에서 탄력세율 적용 관련 전국 시도 회의 개최('1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배제 17개 시도 합의 ○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항공기 유치를 위한 타 시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는 없으나, 정비용 지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있는 실정이므로 ○ 우리시도 2019년 제정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활용하여 신규항공기 등록시 김포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2019년 98대 중 38대 등록, 약 4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의 항공기 탄력세율 적용 여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조례를 활용한 신규항공기 서울시 등록 유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외국인 체납 관련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안내가 필요하고, 외국인이 집중해서 모이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안내 등 특별 정리를 두어 일괄 정리 등 방안 검토 필요</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 : 서울시 25만 4천명('20.11월 현재) ○ 외국인 체납자 : 7만 7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세목별 체납 현황('21.1월 현재)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백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603 609 1444 846"> <thead> <tr> <th>세 목</th> <th>체납자</th> <th>건 수</th> <th>체 납 액</th> </tr> </thead> <tbody> <tr> <td>합 계</td> <td>76,996</td> <td>115,157</td> <td>4,224</td> </tr> <tr> <td>주 민 세</td> <td>64,539</td> <td>82,303</td> <td>346</td> </tr> <tr> <td>자 동 차 세</td> <td>9,800</td> <td>21,994</td> <td>1,222</td> </tr> <tr> <td>지 방 소 득 세</td> <td>2,747</td> <td>3,683</td> <td>1,885</td> </tr> <tr> <td>취 득 세</td> <td>61</td> <td>71</td> <td>41</td> </tr> <tr> <td>기 타</td> <td>151</td> <td>7,106</td> <td>73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 건수 당 3만7천원으로 자치구에서 관리 - 주민세와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전체의 90.6% 차지 ○ 모바일 안내 : '19.9월부터 체납자에게 체납내역을 모바일 전송 개시 ○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 안내문은 외국인 거주지 잦은 변경 등 송달 문제가 있어 서울글로벌센터(7개) 등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안내 팝업창을 게시하여 상시 홍보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지방세 납부 안내문 제작 : '21년 2월 ○ 센터에 지방세 납부 안내문 게재 협조 요청 : '21년 3월 	세 목	체납자	건 수	체 납 액	합 계	76,996	115,157	4,224	주 민 세	64,539	82,303	346	자 동 차 세	9,800	21,994	1,222	지 방 소 득 세	2,747	3,683	1,885	취 득 세	61	71	41	기 타	151	7,106	730
세 목	체납자	건 수	체 납 액																										
합 계	76,996	115,157	4,224																										
주 민 세	64,539	82,303	346																										
자 동 차 세	9,800	21,994	1,222																										
지 방 소 득 세	2,747	3,683	1,885																										
취 득 세	61	71	41																										
기 타	151	7,106	730																										
<p>○세무조사 관련 소송에 밀리지 않도록 단독 세무조사 부서를 신설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p> <p>(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조사 기능과 세원발굴·대응 기능을 분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직 보강안 검토 진행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담당관 정원 확대(안) 검토 협의 및 진단 의뢰 : '21.5월 ○ 세무과 조직(팀) 신설 확대 방침 수립 : '21.6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이 53.4%에 달하고 있어 과세가 부실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과세와 충분한 교육, 정례적인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불복절차에서 과다하게 부과 취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대책 마련 필요 (세제과,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 적부심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소액건에 대한 심사대상 확대와 과세표준의 경정 등에 따른 일부채택 결정이 다른 구제절차와 비교하여 많기 때문임 ○ 적부심 인용률을 낮추고 명확한 과세를 위해 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추정사례 및 과세기법 공유, 필요시 세무조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여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21년 세무공무원 개정세법 직무교육 실시 : '21.2월 ○ 2021년 상반기 세무조사공무원 실무사례 교육 실시 : '2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하반기 세무조사공무원 실무사례 교육 : '21.7월 ○ 지방세 세목별 자치구 세무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21년 하반기
<p>○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태도가 너무 급변하였으며 강동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상하반기의 보고서가 너무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어 재무국의 일관된 방향이 없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과세자주권 침해, 지방분권 역행, 구축·운영 비용의 지자체 전가, 납부시스템 사장 등을 이유로 시스템 독자 유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 우리시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적 검토 및 행안부와 의 지속적인 협의한 결과(서울시 요구조건에 행안부 긍정 회신), 조건부 통합으로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스템구축비용 및 과세자주권, 법(제도), 시스템(기술), 조직 측면 등 다각적 검토 결과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시스템 1단계 설계내용 중 서울시 통합을 위한 변경사항 분석·확정: '21년 1분기 ○ 서울시 통합시스템 1, 2단계 설계 및 구축: '21년 2~3분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매년 많은 금액이 결손으로 나오는데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의문임.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계획 성립시 면밀히 검토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년부터 '19년까지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을 재산매각수입에 편성 하였으나, 공개매각 유찰('15.8월, '16.12월), 매각방안 변경, 주변 지역 개발에 맞춘 개발 진행 및 공공주택부지 선정 등으로 인한 매각지연으로 세입 결손이 발생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료원 매각대금 예산 편성 : '16년 5,349억원, '17년 4,376억원, '18년 5,149억원, '19년 4,007억원 ○ 현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는 국제교류복합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진행 중으로 '20년 및 '21년 매각대금 세입예산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은 미편성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고시 발표 이후('21년 상반기 예정)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지 활용방안 재검토 ○ 향후 재산매각수입 예산 편성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2019년 언론에 보도하고 2020년다시 중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데, 분납금 및 위약금과 해당 부지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하길 바람.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동 부지 계약해지 귀책 및 매매대금 반환 관련 내·외부 법률자문(2회) : '20. 8월, 11월 ○ 복지부 4회차 분납금 부과 유예요청에 따른 부과유예(2회) : '20. 11월, 12월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 실행위원회 및 현안회의 개최(6회) : '20. 8 ~ '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시기 등 복지부와 협의중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해지 및 매매대금 복지부에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행위원회에서 복지부와 협의후 합의에 의해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 시기 등 결정 : '21년 상반기 ○ 원지동 부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시민건강국(보건의료정책과)에서 활용 방안 마련
<p>○리스차량 등록시 서울시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사용은 서울에서 하지만 등록은 인천에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음. 서울시의 리스차량 공채 매입률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규칙개정 촉구 필요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 매입면제 추진(3%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안 발의: '17.7월(김용석의원) - 시의회 교통위원회 미상정: '17.9월~ ○ 도시철도공채 조례 소관부서(도시교통실 등)와 공채매입율 조정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10월 공채매입율 인하 요청(세제과→도시철도과) ○ '20.2월 공채매입율 인하 관련 부서회의(예산,재정,도시철도) ⇒ 예산·재정담당관 신중 검토의견(즉시 시행 불가) ○ '20.10월 지방세법 상 납세지 규정 개정 건의(세제과→행안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 매입율 조정 검토·협의 지속 ○ 행안부에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 개정 지속건의(소유자주소지 → 이용자 주소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19년 5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무국의 방만한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1.1~2월 - 행안부 금고기준 반영 등 금고지정 평가기준 논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 '21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1년 상반기
<p>○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부서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하길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광석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2.31.시행) < 주요 개정사항 >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상한금액 삭제 ※ 적용내용 :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공원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등에 주민참여감독제 의무시행 ○ 법령·조례 개정내용을 부서에 안내('21.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에 즉각 반영하여 조치하겠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가 몇 년째 맞지 않고 해마다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길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 간 시세 세입은 예산대비 평균 13.8% 초과 징수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년 간 시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630 504 1417 629"> <thead> <tr> <th>구 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137,875</td> <td>141,258</td> <td>155,554</td> <td>170,965</td> <td>182,213</td> </tr> <tr> <td>징수액</td> <td>156,244</td> <td>165,693</td> <td>178,171</td> <td>191,033</td> <td>204,580</td> </tr> <tr> <td>결산율</td> <td>113.3%</td> <td>117.3%</td> <td>114.5%</td> <td>111.7%</td> <td>112.3%</td> </tr> </tbody> </table> ○ 추계 오차가 가장 큰 세목은 취득세로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과 동향 등으로 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19년 간 취득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630 779 1417 904"> <thead> <tr> <th>구 분</th> <th>2015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34,709</td> <td>33,022</td> <td>40,071</td> <td>43,946</td> <td>42,738</td> </tr> <tr> <td>징수액</td> <td>45,276</td> <td>48,921</td> <td>52,952</td> <td>51,917</td> <td>55,908</td> </tr> <tr> <td>결산율</td> <td>130.4</td> <td>148.1</td> <td>132.1</td> <td>118.1</td> <td>130.8</td> </tr> </tbody> </table> ○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위원회 개최: ('17년) 4회, ('18년) 2회, ('19년) 1회, ('20년) 1회 - '21년도 추계에서는 매매, 중과대상, 신축·분양 등 취득 유형별로 추계방식을 세분화하는 등 반영 예정 -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하여 협의 중 (20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내용 : 추계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분석 및 지표개발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사례를 참고하여 세목별·추계방식별 오차를 검증하고 정확성이 높은 모형 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종합시스템 內 세수추계 전산도입 추진 : '21.4월~12월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징수액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0	결산율	113.3%	117.3%	114.5%	111.7%	112.3%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34,709	33,022	40,071	43,946	42,738	징수액	45,276	48,921	52,952	51,917	55,908	결산율	130.4	148.1	132.1	118.1	130.8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137,875	141,258	155,554	170,965	182,213																																												
징수액	156,244	165,693	178,171	191,033	204,580																																												
결산율	113.3%	117.3%	114.5%	111.7%	112.3%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예산액	34,709	33,022	40,071	43,946	42,738																																												
징수액	45,276	48,921	52,952	51,917	55,908																																												
결산율	130.4	148.1	132.1	118.1	130.8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지방세 환급 관련 착오과세, 불복 청구 관련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할 것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특수사례 등 불복청구 발생건이 많고 자치구의 소극적인 소송대응으로 패소사례가 증가하여, ○ 소송 등 불복시 시·구간 공동수행과 보조참가확대 승소를 위해 노력하고, 과오납 발생 최소화 위해 과세전 적부심 제도를 강화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과오납 발생 최소화 위해 자치구 세무공무원 직무교육은 물론 과세규정의 명확화를 통한 분쟁 감축을 강구하겠음 - 과세전 적부심사 등 사전 구제제도 활성화 - 과세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연구 및 개정건의 -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적용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직무교육 강화 																								
<p>○지방세 고액체납 관련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 정부에 촉구할 것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출국금지는 '20.6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5천만원→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 중 ○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적극 금지 -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시세 및 구세 합산금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출국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실적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603 1742 1453 1921"> <thead> <tr> <th>구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금지건수</td> <td>669</td> <td>512</td> <td>424</td> <td>571</td> <td>853</td> </tr> <tr> <td>체납액</td> <td>3,223</td> <td>2,500</td> <td>2,620</td> <td>2,771</td> <td>1,088</td> </tr> <tr> <td>징수액</td> <td>36</td> <td>21</td> <td>11</td> <td>21</td> <td>9</td> </tr> </tbody> </table>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지건수	669	512	424	571	853	체납액	3,223	2,500	2,620	2,771	1,088	징수액	36	21	11	21	9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금지건수	669	512	424	571	853																				
체납액	3,223	2,500	2,620	2,771	1,088																				
징수액	36	21	11	21	9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자치구별 큰 격차 없이 지급되어 인센티브라는 취지가 무색함. 세입증대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자치구 市세입종합평가 개선 계획 수립(20. 12. 30.) ○ 평가개선 3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간소화 : 기존 대비 평가지표 90% 축소 - 자율적 참여 : 기존 일괄참여가 아닌 자율적 참여 - 기여도 반영 : 개인·부서에 대한 실적 기여도 적극 반영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의견수렴, 지방세 연구원 연구결과 등을 참조하여 보완·발전
<p>○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비율 인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타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관철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이사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율 인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20.01.) - 행안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20.01.) - 17개 시·도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개선방안 논의('20.1월)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면담, 협조 요청('20.2월)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출연율 인하계획 언급('20.5월. 전국세정과장회의) ○ '20. 9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율 인하 : 0.015% → 0.012% ('21년은 0.013% 적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세정과장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조, 출연기준의 합리적 인하 조정 지속적 건의(0.012% → 0.01%)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타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담당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구분 법률자문(‘18.11월)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에서 법인을 민법법인과 그외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구분, 민법법인은 사단·재단법인 표시토록하나 특수법인은 사단·재단법인 등기 불가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재단법인으로 변경 요구(‘19.1월) - 연구원에서 현행 법인형식 유지 적절함으로 회신(‘19.4월) ○ 특수법인이 근거법령 상의 준용규정을 통해 일부 민법을 적용받더라도 민법법인으로 할 수 없음(대법원 질의회신, ‘19.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재단법인 등기 위해선 설립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재단법인 조항 필요 ○ 지방자치단체 관리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추천이사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건의하여 지방세연구원 정관 개정 반영(‘20.2월) ○ 현재 전국 광역단위에서 추천하고 있는 선임이사(4명, 임기1년)을 서울·경기 지역은 별도로(임기2년) 추천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21.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 연구 확대, 서울·경기지역 선임이사 협의 추진 등으로 지방세연구원 운영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p>○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보통세로 전환되어 출연금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환수까지 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도록 행정안전부에 법령개정 건의(‘20. 8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 및 건의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재산세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자치구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 않는지? 재산세 관련하여 어디까지 자치구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주시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에서 재산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또한, 재산세는 자치구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정권의 핵심요소이며, 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자치구에 속한 권한에 해당함 ○ 다만,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의 위임범위인 세율의 가감이 아닌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은 위법한 사항이며, ○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는 탄력세율 적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초구 조례안의 무효 여부에 관한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자치구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예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재산세가 자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함. 서울시 재무국의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람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조례로 특정연도의 재산세 세율을 가감(탄력세율)하는 경우 이후년도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지속적 세수 결손과 타 자치구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 상한 : 3억이하 5%, 3억초과~6억이하 10%, 6억초과 30% ○ 또한, 조례에 의한 한시적 세율 인하 시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조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1.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구간별 22.2% ~ 50%인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탄력세율제도 개선 연구 용역 : '21년 상반기 ○ 대법원 판결과 연구용역 결과 종합 검토 : '21년 하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3조에 따르면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 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의미도 지방세인 재산세 징수가 자치권임을 의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4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 중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부분을 삭제하였음.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서 부여한 자치구의 탄력세율 조정 권한 같은 경우, 특별시분이 아니라 자치구분에 관한 탄력세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조례로 특정연도의 재산세 세율을 가감(탄력세율)하는 경우 이후연도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지속적 세수 결손과 타 자치구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 상한 : 3억이하 5%, 3억초과~6억이하 10%, 6억초과 30% ○ 또한, 조례에 의한 한시적 세율 인하 시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조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1.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구간별 22.2% ~ 50%인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탄력세율제도 개선 연구 용역 : '21년 상반기 ○ 대법원 판결과 연구용역 결과 종합 검토 : '21년 하반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외국인 부동산 매수 정부가 파악 못하고 있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납액에 재산세가 포함 된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 후 해외 거주자들에게 어떻게 재산세가 징수되는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재산세 납부현황 등) (세무과,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외국인 등록대장 자료 현행화로 정확한 고지서를 송달하고, 외국어 번역 지방세 안내문 외국인 센터 등 배포 및 납기내 징수하고 있으며, - 해외 거주 납세자는 납세관리인 신고 및 지정자 등에 부과·고지하여 징수함(전자고지 포함) ○ 외국인 등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을 체납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세금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체납 징수하고 있음 - 외국인 소유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있으나, 실거주자가 불분명하여 서울글로벌센터와 협조하여 재산세 납부를 안내할 예정임 <p>※ 외국인 체납액중 재산세 규모: 612백만원(전체 체납액 대비 14.5% '21.1월 기준)</p>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와의 업무협조를 통해 해외거주자들에 대한 재산세 징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음
<p>○자치구가 세무종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종합시스템은 지방세 4법을 근거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법 개정 시마다 개정사항을 적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재산세 탄력세율 관련사항도 현행 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법 개정사항 외에도 자치구 요구사항을 수렴(년1회 정기 및 수시)하여 시스템 반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개발 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지방세 부과 징수율이 전국17개 시도중 13위.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체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은 매년 2천억원 내외로큰 차이가 없는데, 체납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감소 주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년도)징수율 지속적 상승으로 신규 체납액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54억원('16년) → 2,641억원('17년) → 2,582억원('18년) → 2,539억원('19년) → 2,571억원('20년) - (지난년도)체납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638 772 1444 929">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지 난 년 도</td> <td>합 계</td> <td>4,722</td> <td>4,674</td> <td>5,841</td> <td>5,405</td> <td>4,299</td> </tr> <tr> <td>징수액</td> <td>2,374</td> <td>2,094</td> <td>2,003</td> <td>2,263</td> <td>1,846</td> </tr> <tr> <td>결손액</td> <td>2,348</td> <td>2,580</td> <td>3,838</td> <td>3,142</td> <td>2,45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수가 불가능하고 5년 이상 누적된 체납을 정리하고 징수 가능 체납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결손처분(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조치 - 장기 소액채권(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의 적정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에 대한 적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활용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칭) 별도 구성하여 분기별 심의 후 결손처분 - 특히, 전부 결손처분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6명이 전담하여 5년간 추적·징수 강화 - 분기별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 사례를 검토하여 문제점 보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처분 적정성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 분기별 ○ 결손처분 후 징수 사례 검토하여 문제점 보완 : 분기별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 난 년 도	합 계	4,722	4,674	5,841	5,405	4,299	징수액	2,374	2,094	2,003	2,263	1,846	결손액	2,348	2,580	3,838	3,142	2,45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지 난 년 도	합 계	4,722	4,674	5,841	5,405	4,299																					
	징수액	2,374	2,094	2,003	2,263	1,846																					
	결손액	2,348	2,580	3,838	3,142	2,453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p>○법에서 정한 의안 제출기한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상이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차이 발생. 의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겨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안의 제출시기의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회 회의규칙 제출기한 준수 필요. 재무국의 지속적인 안전 지연 제출 형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원을 거수기로 보는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여짐.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 안전 제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협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일정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명문화되어 전국에 공포된 사항으로 조정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 중앙투자심사는 10.25.까지 개최,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8.10.까지 의뢰서를 수합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을 더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 ○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준수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음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 받음 <p>※[참고] 중앙투자심사 일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p> <table border="1" data-bbox="619 1010 1426 1281"> <thead> <tr> <th>구분</th> <th>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 담당관</th> <th>시군구 → 시도</th> <th>중앙투자심사 의뢰</th> <th>중앙투자심사 완료</th> </tr> </thead> <tbody> <tr> <td>제1차</td> <td>'20.11.30.</td> <td>'20.12.15.</td> <td>1.1.</td> <td>2.28.</td> </tr> <tr> <td>제2차</td> <td>3.2.</td> <td>3.15.</td> <td>3.31.</td> <td>5.31.</td> </tr> <tr> <td>제3차</td> <td>5.14.</td> <td>5.31.</td> <td>6.15.</td> <td>8.15.</td> </tr> <tr> <td>제4차</td> <td>7.26.</td> <td>8.10.</td> <td>8.25.</td> <td>10.25.</td> </tr> </tbody> </table>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1~3차에 심사를 미리 받도록 독려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제출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겠음 ○ 다만, 긴급을 요하는 피치못할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해당사업만 추가로 별도 제출함으로써 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또한, 이 경우에도 전문위원실에 사업설명서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 심도있게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div>	구분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시군구 → 시도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앙투자심사 완료	제1차	'20.11.30.	'20.12.15.	1.1.	2.28.	제2차	3.2.	3.15.	3.31.	5.31.	제3차	5.14.	5.31.	6.15.	8.15.	제4차	7.26.	8.10.	8.25.	10.25.
구분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시군구 → 시도	중앙투자심사 의뢰	중앙투자심사 완료																						
제1차	'20.11.30.	'20.12.15.	1.1.	2.28.																						
제2차	3.2.	3.15.	3.31.	5.31.																						
제3차	5.14.	5.31.	6.15.	8.15.																						
제4차	7.26.	8.10.	8.25.	10.25.																						

건의사항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를 통하여 재정자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필요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추진(안)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향 및 타 지자체 공동대응 협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대·서울연구원·지방세연구원 등을 통해 지방세 이양 논리 보강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시군구협 공동대응 ○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을 위한 국세 추가 지방 이양 입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율(10%→30%), 또는 지방소비세(21%→41%),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 제시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재무국·기조실 공동 재정분권 TF 등 운영 :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동향 및 대응논리 개발, 학술용역·정책토론회 등 개최 ○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정부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등 마련: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타 시·도 동향 파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심의 시·도 공동대응 강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유착 및 비리가 없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자원이 서울시에 유입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연구 필요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업체정보 제공 및 홍보로 지역업체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계약정보통합시스템 '서울계약마당'에 서울시 자치구별 업체 정보를 공개하여 공공기관 구매 독려 - 공공시장 진입 경험이 적은 신생·소규모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 대상 실무 교육 실시('18년 1회, '19년 2회, '20년 2회) ○ 경쟁계약시 지역업체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 신설('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사업 추진시 해당 자치구 소재 업체 가점(2점) 신설 - 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입찰시 가점(2점) 신설 ○ 한편,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국·본부·기관별 계약횟수(연 4회)를 시 전체 연 9회까지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을 확대를 위해 용역·물품의 수의계약 가능 계약범위를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음('20.6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의계약시 소상공인과 지역업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 및 현황 파악이 필요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자료 확보 추진 : '20.12~'21.1월 -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선박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각 자치구별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자료 확보실태 파악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부과누락 여부 조사 및 누락분 추정 : '21.2~4월 ○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자료 송부 관련 지침 통보 : '21.2~5월 ○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자료 효율적 확보를 위한 행안부 법령개정 건의 : '21. 6월
<p>○ 서울시 세입시스템과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세입정보시스템과 행안부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예정)시스템에 대한 검토 및 적극적 업무협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적 의견개진 및 협의 -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비교·검토 : '21. 5월~11월 - 검토결과에 대한 시스템 반영요청 : '21. 12월

건의사항	조치결과
<p>○ 사유지 무단 점거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퇴거 요청보다는 회유책(설득)을 통해서 갈등없이 점거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길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저소득층의 주거용 무허가건물 점유가 대부분이며 주기적으로 변상금 부과, 체납독촉,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재산자가 많아 재산압류의 어려움이 있음 ○ 무단점유로 인한 민원 발생시 현장 방문하여 상담 및 자진퇴거 유도 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매매계약 체결 안내 예정이며, ○ 저소득층 무단점유자에게 맞춤형급여 신청 및 관할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점유자의 자진퇴거를 설득하여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p>○ 예산 집행액 중 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규모가 큼. 운영비 등 예산 사용에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상경비 등 고정지출 비용 절감을 위하여 서울시에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기준경비 등에 대해 한도액 및 기준단가를 설정하여 범위 내 편성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정보화·학술용역사업 사전심사, 출자출연동의, 행사 및 민간경상 등 지방보조사업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는 한편, 서울시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비율 상향 조정을 기재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 시에는 계약심사 및 일반지출 회계심사를 통해 회계의 일반원칙 및 회계관계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중복·낭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며,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하여 부서지출 일상경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편성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건의사항	조치결과
<p>○ 탈석탄 시금고 지정지표 반영 확대추세에 따라 서울시도 지표 개정에 대해 가급적 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1~2월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등 금고지정 평가기준 논의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 '21년 상반기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1년 상반기
<p>○ 전략적 자산취득 관련해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검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자산취득 관련하여 국유지와 사유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제조사 추진 ○ 국유지와 사유지의 시책사업부지 활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지 및 사유지 현황 일제조사 : '21년 상반기 ○ 관계기관(기재부, 경찰청, 서울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1.4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최근 3년 시세 세입 추계(안)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
○ 부동산자문회의 회의록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2.)
○ 시금고 시스템 관련 행안부 통합결정에 따른 시금고의 약정 변경계획 및 매몰비용 대책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시금고 약정 변경 추진 : '21년 하반기 - 시금고 약정업무(이택스 시스템 한정) 중 행안부 통합구축으로 추진이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금고 약정 변경' 협의 및 약정변경
○ 금고 약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 향후계획 (재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우리시 자치구 재산세 세입 증감분석 (세제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
○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산식 근거 자료 (세무과)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p>○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 (최근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치구별 세부 현황, 차량업무 지원 인력 근무평가 자료, 대 행 사업비 정산서, 영치인력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당포함 입금지급 세부현황)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9.)</p>
<p>○ 지방세 과오납 관련(최근3년간 백만원이상 환급받은 환급자 및 법인 세부내역, 2018~2019년 불복청구 세 부현황, 2019년 착오납부 세 부현황, 2020년 이중납부 세 부현황, 2회이상 환급금을 받 은 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현황) (세무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p>
<p>○ 최근5년 결손 처리 후 징수결 정 금액 현황 (38세금징수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9.)</p>
<p>○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 서울시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대한 대 법원 제소 소장 사본(사본 제 출 불가 시, 제소 주요내용 제 출 가능) -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자 문결과 내용 일체 (세제과)</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p>